

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87
----------	-----

2009년 7월 9일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9일,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
(2009년 6월 26일 상정·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평생교육국장 김재환)

가. 제안이유

- 상장·공로패에 대한 공적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, 그 밖에 관련 조문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와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“공적심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의회위원회”로 변경함(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).

- 상장·공로패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장 및 공로패에 대한 공적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, 조문의 용어를 2008. 12. 31.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와 일치시키고자 “공적심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의회”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,
- 안 제9조 “공적심사”와 관련하여,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제10조에서 “공적심의”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의 “공적심사”를 “공적심의”로 변경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.
- 안 제9조제3항과 관련하여,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“상장”과 “공로패”의 경우 공적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“상장”의 수여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동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“상장”의 경우에는 공적심의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

- 안 제5조제3항에 규정된 “공로패”의 수여 조건의 경우 “각종 체육 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지대한 선수 및 지도자”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입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며 자칫 공로패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적심의를 생략하고자 한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- 다만 안 제9조제3항에서 상장과 공로패 수여의 공적심의 생략 조건으로 규정된 “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”는 매우 주관적이나 기준으로써 합리적인 표창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하며, 또한 이미 안 제5조에서 상장과 공로패 수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 조건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안 제9조제3항의 제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9조제3항 중 “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

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”를 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”로 수정함.

8. **심사결과** : 수정안 가결

9. **소수의견의 요지** 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8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9년 7월 9일

제안자 : 교육문화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9조제3항의 상장 및 공로패의 공적심의 생략 조건이 매우 주관적이고 이미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객관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9조제3항의 수여 기준을 삭제하여 중복규정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상장 및 공로패의 공적심의 생략 기준인 “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”를 삭제함.(안 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 중 “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”를 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공적심사)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 하에 <u>공적심사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공적심사위원회</u>는 표창 조례 제11조의 <u>공적심사위원회</u>에서 이를 대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공적심의) ①..... <u>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</u>..... <u>공적심의위원회</u>..... </p> <p>②..... <u>공적심의위원회</u>..... <u>공적심의위원회</u>..... </p> <p>③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<u>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공적심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<u>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공적심의)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③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공적심사)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<u>공적심사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공적심사위원회</u>는 표창조례 제11조의 <u>공적심사위원회</u>에서 이를 대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9조(공적심의) ①.....대상자의 <u>공적</u>을 심의하기.....</p> <p>.....<u>공적심의위원회</u>.....</p> <p>②.....<u>공적심의위원회</u>.....<u>공적심의위원회</u>.....</p> <p>③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<u>공적심의위원회</u>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